

전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가합24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재단법인 C 사이에 체결된 2017. 10. 10.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목록 기재 ‘지급이자’에 대한 대위변제 합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437,6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례식장업, 봉안당(납골당)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위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는 봉안당 사업, 장례식장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장례식장업, 봉안당 임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재단법인 C(위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I’, ‘재단법인 J’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1. 3. 29. 봉안당 건립 및 안치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그리고 K은 D, H,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D는 피고로부터 2006. 4. 14.경 36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20. 6. 28.경 1,4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는데(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은 2017. 10. 10.부터 2020. 3. 2.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6,437,642원을 지급하였다.

라. C과 H는 2016. 1. 14. 원고와 사이에, C과 H가 운영하는 봉안당 시설 및 그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C과 H로부터 봉안당 시설 및 그 운영권을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C과 H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3900호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양도대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11. 14. ‘H와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도 아닌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대위변제 합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이자 합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2003. 3.경 봉안당 사업 및 장례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봉안당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나) D는 2006. 4. 14.경부터 2010. 6. 28.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D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L 묘지 4,308㎡, M 묘지 356㎡ 및 그 지상의 봉안당, 장례식장 등 묘지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D가 봉안당 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하면 재단법인만이 봉안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었고, 이에 따라 D의 실제 운영자인 K은 2011. 3. 29. C을 설립하게 되었다.

라) C은 2011. 7. 20. D와 봉안당 사업 운영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의하면 ①

D가 소유하고 있는 봉안당 시설 일체를 C 명의로 설치신고하고(C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② 봉안당 시설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는 D가 부담하며, ③ D가 봉안당의 분양 및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④ C은 봉안당 관리비(연회비)에 대한 관리집행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 14. H 및 C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가등기 현황, C이 보유하는 봉안당 사업권, 이 사건 대출금의 존재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아 봉안당 사업을 운영하고, 양도대금 정산이 완료되면 원고가 C의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바)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C은 2017년하반기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봉안당 분양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봉안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실제로 봉안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②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당초 설립 목적대로 봉안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봉안당 사업에 이용되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③ D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당시 C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소유권자 내지 가등기권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가등기 현황, C이 보유하는 봉안당 사업권, 이 사건 대출금의 존재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양도대금의 정산 이전에는 C이 봉안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서 봉안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C의 여러 행위 중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C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의석, 판사 김진아, 판사 정주현

1) 위 판결에 대하여 C과 H가 항소함에 따라 그 항소심 사건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나13396호로 계속 중이다.